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9. 16.
도시환경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제출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 발의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상정 및 의결: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 9. 16.)

## 2.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중인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시설규모	직원수	사업비	現 위탁현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달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두류길 141 (두류동)	지하 1, 지상 2층 (529.54㎡)	4명	273 백만원	2024. 1. 1.~ 2025. 12. 31. (2년)	모두의도시 협동조합 (대표 김현주)

##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위탁내용: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신규사업 발굴 지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업효과의 지속적인 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 도시재생 자원조사, 주민의견 수렴, 모니터링, 재생사업 홍보
- 민간위탁기간: 3년(2026. 1. 1.~2028. 12. 31.)
- 위탁금액: 400백만원 정도 ※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인력: 상근 6명(센터장 1, 팀장 2, 코디네이터 3)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4. 관련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7조

##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최윤미)

- 본 동의안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재위탁 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재위탁 운영에서는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신규 현장지원센터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센터 내 현장지원팀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됨.
- 그간 센터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 참여 프로그램,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 사업 공모 지원 등 다양한 실적을 통해 도시재생의 인식 확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현장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 발전 방향으로 전문적이고 현장지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종합적으로, 달서구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성과와 정책자문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 적법성과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약:**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